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월 2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 관

◎法律 第7139號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
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
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
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을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
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를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서”로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
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이용자의 불만”을 “이용자의 고충”으로 한다.

제28조중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열람”을 “열람·내역”으로 한다.

제33조제6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2. 매출액·시설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6조제1항중 “사업자”를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

호관리체계"라 한다)가 소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7조의2 및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이용자의 정보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
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
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
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
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
련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
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

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
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 전단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
로그램”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에 제5호의2, 제8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

제54조의 제목“(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을“(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로 하고, 동조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목적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제67조제2항(중전의 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3호의2 내지 제1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4호 내지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

조제5항(중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0조제2항).
- 다.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2 신설).
- 라. 인터넷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법 제45조

제4항 및 제46조의3 신설).

마.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의2 신설).

사.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법 제6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월2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 관

◎法律 第7140號

情報通信工事業法中改正法律

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을 확인받은 者를 말한다.”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16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를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제5항)중 “監理員의 資格·業務範圍 기타”를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③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